

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18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,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「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하여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고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9.10.26. ~ 2019.10.28.) 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담당관-2149, 2019.10.25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담당관-2149, 2019.10.25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(주민복지과-10447, 2019.10.25)

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출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그 밖의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

1.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그 밖의 여유자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평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토지매입비 등 균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4.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
②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군수는 기금을 평창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2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 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 4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 5. 그 밖의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 기능은 [「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」](#)에 따른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7조(회계관계 공무원 지정)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예산담당 부서장
2. 기금출납원: 예산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[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](#)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 발췌서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재정법

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재정안정화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0. 24.]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평창군 재정안정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 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담당관 한윤수
연락처	(033) 330 - 2065